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2023-8호
2023. 2. 10.(금)

선	기관(부서)의 장
람	

차 례

고 시(1)

-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고시 제2023-17호) 1

공 고(11)

-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처분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공고 제2023-140호) 2
-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처분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공고 제2023-144호) 3
- 2023년도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및 주거안전 지원사업 공고(공고 제2023-151호) 4
- 2023년도 공동주택 단지내 도로시설 보수 지원사업 공고(공고 제2023-153호) 29
- 2023년도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외벽도색 지원사업 공고(공고 제2023-154호) 36
- 2023년도 공동주택 노후 공동시설물 관리비용 지원사업 공고(공고 제2023-156호) 43
- 공동주택 선거관리 전자투표 실시 지원계획 공고(공고 제2023-158호) 50
- 소하천정비비행계획의 공고(공고 제2023-162호) 55
- 비래동로 노상 공영주차장 수탁관리자 선정 입찰 공고(공고 제2023-173호) 59
- 대전광역시 대덕구 노상주차장 설치 행정예고(공고 제2023-175호) 64
- 회덕동(장동)~상서간 도로개설사업 보상계획[3차] 및 열람 공고(공고 제2023-176호) 68

입 법 예 고 (4)

-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공고 제2023-164호) 71
-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공고 제2023-165호) 78
-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공고 제2023-166호) 84
-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공고 제2023-167호) 90

공									
람									

발행: 대전광역시 대덕구 / 편집: 기획홍보실: 34443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오정동) ☎ 608-6602

대전광역시 대덕구 고시 제2023-17호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2월 10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 도로명주소 부여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 사유	도로명 부여사유 (도로명 고시일)
송촌동 444-1	선비마을로 141	2023. 2. 10.	건물신축	예로부터 선비들이 살던 마을이라는 의미에서 유래
중리동 363-33	중리로75번길 20	2023. 2. 10.	건물신축	중리로의 시작 지점에서부터 약 750m 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중리동 379-16, -17	중리서로41번길 55	2023. 2. 10.	건물신축	중리서로의 시작 지점에서부터 약 410m 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신일동 34-2, -1	산업단지로93번길 31	2023. 2. 10.	건물신축	산업단지로의 시작 지점에서부터 약 930m 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토지정책과(☎ 042-608-5306)로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http://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2014년 1월 1일부터 도로명주소만을 사용해야 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끝.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처분사전통지서(청문) 공시송달 공고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제7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에 따른 영업자의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에 대한 직권말소 예정사항을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3년 2월 10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공고기간: 2023. 2. 10. ~ 2023. 2. 24.(15일간)
2. 근거법규: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제37조제7항
3. 행정처분(직권말소) 공고내용
 - 가. 처분의 제목: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직권말소
 - 나. 대상업소: 대덕구 동춘당로94번길 11-7 (송촌동) / (주)버클리 (한○일)
 - 다. 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폐업
 - (주)버클리(사업자등록 폐업일 2010. 7. 9.)
4. 고지사항
 -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23년 2월 10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을 경우 신고 사항에 대하여 공고 등의 절차 없이 직권말소 처리됨을 알려 드립니다.
5. 본 처분에 대한 문의: 위생과 위생관리팀 ☎(042)608 - 6902. 끝.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처분사전통지서(청문) 공시송달 공고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제7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에 따른 영업자의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에 대한 직권말소 예정사항을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3년 2월 10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공고기간: 2023. 2. 10. ~ 2023. 2. 24.(15일간)
2. 근거법규: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제37조제7항
3. 행정처분(직권말소) 공고내용
 - 가. 처분의 제목: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직권말소
 - 나. 대상업소: 대덕구 신탄진동로7번길 46 (신탄진동) / 그남자의식탁 (차○숙)
 - 다. 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폐업
 - 그남자의식탁(사업자등록 폐업일 2019. 7. 16.)
4. 고지사항
 -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23년 2월 10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을 경우 신고 사항에 대하여 공고 등의 절차 없이 직권말소 처리됨을 알려 드립니다.
5. 본 처분에 대한 문의: 위생과 위생관리팀 ☎(042)608 - 6902. 끝.

2023년도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및 주거안전 지원사업 공고

공동주택 입주자 등의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고, 단지 내 교통안전시설을 개선함으로써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공동체 활성화 및 주거 안전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10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접수기간 : 2023. 3. 6. ~ 3. 17.(12일간)
2. 접수장소 : 대덕구 공동주택과 및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3. 지원사업 : 3개사업 / 공동체 활성화 분야(2개사업) 및 주거안전 분야(1개사업)
 - 가. 공동체 활성화 시설 지원 사업
 - 나.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지원 사업
 - 다. 단지내 교통안전시설 설치 지원 사업
4. 분야별 사업개요
 - 가.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시설 지원사업
 - 사업대상 : 관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단지 / 임대주택 포함
 - 사업내용 : 입주민 공동체 활동을 위한 공유시설(공간), 경비원 등 공동주택 근로자 휴게실 등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시설의 설치 · 보수
 - 사업예산 : 42,000천원 / 자부담 20% 이상
 - 지원금액 : 단지별 21,000천원 이하(총사업비 80% 범위 보조금 지원)
 - 지원단지 : 2개소
 - 나.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
 - 사업대상 : 관내 공동주택 단지(30세대 이상)
 - 사업내용 : 입주민 화합 · 친목 · 소통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비용 지원

- 사업예산 : 8,000천원
 - 지원금액 : 단지별 4,000원 이하
 - 지원단지 : 2개소
 - ※ 자부담 : 최초 신청단지(없음), 2년차(10% 이상), 3년차(20% 이상)
- 다. 단지내 교통안전시설 설치 지원사업
- 사업대상 : 관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단지 / 임대주택 포함
 - 사업내용 : 공동주택 단지내 도로 교통안전시설 설치 · 보수
 - 사업예산 : 13,000천원 / 자부담 20% 이상
 - 지원금액 : 단지별 6,500천원 이하(총사업비 80% 범위 보조금 지원)
 - 지원단지 : 2개소

5. 지원사업의 결정

- 심사기준(사업의 필요성 · 시급성 · 단지규모, 노후도, 기 지원현황 등)에 의거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에 의한 현장 확인 후 “대덕구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단지 및 지원액 결정
-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된 사업은 동장 및 관리주체에게 통보하며, 관리주체는 선정된 사업을 게시판 등에 게시

6. 제출서류

- 가. 분야별 지원사업 신청서 1부 [서식1-1~3]
 - (의무관리단지) 입주자대표회의(관리단)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 (비의무관리단지) 공동주택 지원사업 신청 동의서(입주자 2/3이상) 제출 [서식1-4]
 - ※ 소규모(비의무관리)단지 지원은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지원 분야에 한함.
- 나. 사업계획서 1부 [서식2]
 - 공동체시설 및 교통안전시설 사업은 사업위치 도면 및 사진(신청 당시) 첨부
- 다. 신청단지 일반현황 1부 [서식3]
- 라. 공동주택관리규약 개정 연혁(최근 3년 관리규약준칙 반영) 1부.
- 마. 자부담 능력 입증자료 (잔액증명서, 통장사본 등)
- 바. 소요 사업비 산출내역 및 설계도서
 - 원가계산서, 수량산출서, 단가조사서 제출 (조달청가격 및 물가정보 참고)
 - ※ 단가조사 어려운 공사는 견적제출 가능(견적은 3개 업체이상 비교 견적)

사. 지방보조사업 청렴이행 서약서 1부

7. 지원결정 취소 사항

가. 지원결정을 받기 전에 사업을 시행하였거나, 신청서와 다른 내용으로 공사 입찰을 추진한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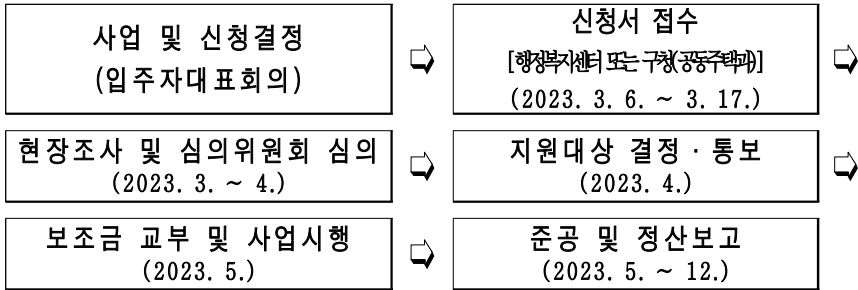
나. 사업비 과다 또는 허위계획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 선정된 경우

다.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정부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라. 사업계획서 상 령 규정 위반 등 보조금 지급에 장애요인이 있을 경우

마. 기타 관계법령 규정 위반 등 보조금 지급에 장애요인이 있을 경우

9. 공모사업 지원절차 (예정 흐름도)



※ 심사 및 평가계획 일정 변경에 따라 세부 추진일정 변경 가능함.

10. 유의사항

가. 접수된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서류 일체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사업계획서는 서식2 참고하여 3매 이내로 1부 제출 (평가기관 요구시 추가 제출)

다. 예산 균형집행 계획에 의거 반드시 5월 이내 공사(프로그램) 착공(시행)

라. 의무관리대상 단지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라 공사사업자 선정(전자입찰시스템 이용 경쟁입찰 원칙/ K-apt 시스템)

마. 지원사업으로 보수 · 설치된 시설은 대전광역시 지원받은 시설임을 표시

※ 사업문의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공동주택과(☎042-608-4162~3)

붙임 1. 분야별 지원사업신청서(임의관리단지 동의서) 각 1부(서식1-1~4).

2. 사업계획서(서식2)

3. 공동주택단지 일반현황(서식3)

4. 지방보조사업 청렴이행 서약서(서식4)

5.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사업비 편성 및 지출기준(참고1~참고4) 끝.

[서식1-1]

2023년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시설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단체	공동주택명 (활성화단체명)	고유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 화		
		FAX		
	대표자명	주민등록번호		
지원사업	사 업 명			
	사업유형	신설() / 개·보수()	입주자대표 의 결 일	
	2022. 00. 00.			
	사업목적	○ 공동체시설 설치(보수) 목적		
	사업내용 (시설개요)	○ 시설위치(장소), 기존용도, 변경용도, 사용면적, 활동인원 등 공동체공간 기본현황 및 공간 활용계획에 대한 개요 기재 - 대상인원 : 공동체시설 운영자(공동체활동화 단체) 및 시설 이용자 - 주용내용 : 공간활용 등 : 당초(○○○로 사용) ⇒ 변경(○○○로 사용) ※ 신설인 경우 면적 및 구조 기재, 설계도서(배치도, 평면도) 첨부 요함.		
	추진기간	2023. . . ~ 2023. . .		
	총사업비	천원	보조금	천원(%)
		(보조금, 자부담 합계)	자부담	천원(%)
실무자	성 명	전화(휴대폰)		
	업 무	E-mail		
위와 같이 대전광역시 지방보조금관리조례 제13조 및 공동주택 관리조례 제4조에 따라 상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으자 소정의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2023년 월 일				
신청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 (인)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단체 대표 ○○○ (인)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 (인)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입주자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증빙 서류 사본				
2. 사업계획서				
3. 공동주택현황				

[서식1-2]

2023년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단체	공동주택명 (활성화단체명)		고유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 화		
			FAX		
	대표자명		주민등록번호		
지원사업	사업명				
	사업유형	※ 관리비절감, 주민소통·화합, 자원봉사, 나눔사업 등	입주자대표 의 결 일	2023. 00. 00.	
	사업목적	○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목적			
	사업내용	○ 장 소 : 프로그램 활동 공간 등 위치 - 대상인원 : 주민참여 규모 및 연령 - 주용내용 : 프로그램 세부내용, 마을리더 유무 및 공동체활성화 단체 유무			
	추진기간	2023. . . ~ 2023. . . .			
	총사업비	천원		보조금	천원(%)
		(보조금, 자부담 합계)		자부담	천원(%)
실 무 자	성 명		전화(휴대폰)		
	업 무		E-mail		
위와 같이 대전광역시 지방보조금관리조례 제13조 및 공동주택 관리조례 제5조에 따라 상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소정의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2023년 월 일					
신청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 (인)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단체 대표 ○○○ (인)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 (인)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입주자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증빙 서류 사본 2. 공동주택 지원사업 동의서(비의무관리 단지) 1부. 3. 사업계획서 4. 공동주택현황					

[서식1-3]

2023년 공동주택 단지내 교통안전시설 설치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자	공동주택명 (활성화단체명)		고유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 화		
			FAX		
	대표자명		주민등록번호		
지원사업	사업유형	전체(), 일부()	입주자대표 의 결 일	2023. 00. 00.	
	단지내 교통사고발생	유(), 무()	단지내 도로 통과도로 유/무	· 출입구 : 개소 · 통과도로 : M	
	사업내용	○ 사업목적 : ○ 주요 설치시설 및 위치 - 주요시설 : 안전표지(노면표지), 과속방지턱, 보행자 방호울타리, 반사경등 - 설치위치 : ※ 단지내 도로 사고 현황(해당되는 경우) 및 관련 도서(단지 배치도 및 도로현황, 지하주차장 평면도) 첨부 요함			
	추진기간	2023. . . ~ 2023. . . .			
	총사업비	천원		보조금	천원(%)
		(보조금, 자부담 합계)		자부담	천원(%)
	실 무 자	성 명		전화(휴대폰)	
업 무			E-mail		
위와 같이 대전광역시 지방보조금관리조례 제13조 및 공동주택 관리조례 제4조에 따라 상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소정의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2023년 월 일					
신청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 (인)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 (인)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입주자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증빙 서류 사본 2. 사업계획서 3. 공동주택현황					

[서식1-4]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신청 동의서

(비의무관리 단지 대표자 선임 및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증빙 서류)

- 사업명 : 2023년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
- 공동주택명 :
- 주소 :
- 동의사항

1. 대전광역시 ○○구에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에 공모 신청함
 - ▷ 사업내용 :
 - ▷ 자부담금 : 총사업비의 ○○%이상을 자체 부담하겠음
 - ※ 최초 신청단지는 자율항목이며, 2년차 이상 단지는 의무비율 적용
2. 아래 주민을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사업의 입주자 대표로 선임함
 - ▷ 성명 : , 생년월일 : , 동·호수 : 연락처 :
3. 상기 대표자로 하여금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관련 모든 업무를 수행하도록 위임함

연번	동/호수	성명 (입주자 등)	동의여부 (서명)	연락처	소유자와 관계 (본인·배우자·자녀 등)
1					
2					
3					
4					
5					
6					
7		- 입주자등 2/3	동의서 제출 -		
8					
9					
10					
11					
12					
13					
14					
15					

※전체 입주자등 3분의 20이상 동의서 / 사용자 및 입주자(소유자 또는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을 말함)

[서식2]

2023년 공동주택 ○○○ ○○○ 지원사업 계획서

■ 사업개요

단체명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지역			
사업대상			대상자수 (실인원수)			
사업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 					
사업내용	세부사업명 (프로그램명)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 				
예산	총사업비	천원		보조금 신청금액	천원	
	자부담	천원		자부담률 (%)		
보조금 신청금액 (예산항목은 사업별 성격에 따라 변경 가능)	인건비	천원 (%)	홍보비	천원 (%)	사업 진행비	천원 (%)
	활동비	천원 (%)		천원 (%)		

■ 사업 추진계획 (2-1. 공동체 시설, 교통안전시설 사업) ※ 사업별 해당서식(1~8번) 선택

1. 사업명 : ○○○○(신규, 계속사업)
 ※ ()는 신규사업, 계속사업 구분 기재

2. 사업목적

-
-

성과 목표	성과 지표
* 본 보조사업을 통하여 어떠한 성과를 이룰 수 있는지 <u>계량화(수치)된 목표로 제시</u>	* 투입지표나 과정지표보다는 <u>산출지표나 결과지표 제시</u>

3. 사업개요

- 추진기간 : 년 월 일 ~ 월 일
- 장 소 :
- 참여대상·인원 :
- 사업량

4. 세부추진계획

사업분야 (세부사업명)	구체적 추진사업 내용	추진시기
	.	8월
	.	9월
	.	
	.	

5. 사업비 구성

● 총 사업비 : 원(100%)

보조금 (신청액)	원(%)	자부담	원(%)

※ 자부담 예산확보방안 및 예산확보증빙서 별지 작성 제출

6. 지출항목별(비목) 집행계획

※ 신청단지별 해당되는 분야만 선택 기재 / 항목별 총액

(단위 : 천원)

사업분야 (세부사업명)	지출항목	금 액			산출 내역	
		계	보조금	자부담		
총 계						
공동체 활성화 시설지원	합 계		80%	20% 이상		
	설계비		80%	20% 이상		
	공사 비	소계		80%	20% 이상	
		재료비		80%	20% 이상	
		노무비		80%	20% 이상	
		경 비		80%	20% 이상	
		기 타		80%	20% 이상	
기타비용		80%	20% 이상			
-						
단지 내 교통안전 시설지원	합 계		80%	20% 이상		
	설계비		80%	20% 이상		
	공사 비	소계		80%	20% 이상	
		재료비		80%	20% 이상	
		노무비		80%	20% 이상	
		경 비		80%	20% 이상	
		기 타		80%	20% 이상	
기타비용		80%	20% 이상			
-						

※ 가급적 각 지출 항목별로 보조금 시비 : 자부담 비율 유지, 단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사업은 제외

⇒ 산출내역 순서 : 단가(원)×인원(명)×면적(m²)×개소×회수(회)×일수(일)×비율(%) 순

★ 산출 기초 및 근거 첨부 / 겹적서(2개업체 이상) 또는 단가조사서 등 산출내역서, 과다 산정시 선정 배제

7. 지방보조사업 수행에 따른 수입금

(단위 : 천원)

수입내용	수입금액	비고

8. 기대효과

○ 사회적(공익적) 기여도 (사회문제 해결 등)

-

○ 단체 역량 발전에 대한 기여도

※ 사업추진에 따른 사회, 시민 등에 미치는 효과를 구체적으로 기재

■ 사업 추진계획 (2-2.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사업) ※ 사업별로 해당서식 선택

1. 사업명 : ○○○○(신규, 계속사업)
 ※ ()는 신규사업, 계속사업 구분 기재

2. 사업목적
 ○
 ○

성과목표	성과지표
* 본 보조사업을 통하여 어떠한 성과를 이룰 수 있는지 <u>계량화(수치)된 목표로 제시</u>	* 투입지표나 과정지표보다는 <u>산출지표나 결과지표 제시</u>

3. 사업개요

- 추진기간 : 년 월 일 ~ 월 일
- 장 소 :
- 참여대상·인원 :
- 사업량

4. 세부추진계획

세부사업명	세부사업내용	추진시기
	.	
	.	
	.	
	.	

5. 사업비 구성

● 총 사업비 : 원(100%)

보조금 (신청액)	원(%)	자부담	원(%)

※ 자부담 예산확보방안 및 예산확보증빙서 별지 작성 제출

6. 지출항목별(비목) 집행계획

(단위 : 천원)

사업내용	지출항목	금액	산출기초	집행시기
총 계		(100 %)		
지방보조금(소계)		(%)		
* 사업수행 계획의 세부 사업명과 연계	홍보비		.	
	인쇄비		.	
	강사료		.	
자부담(소계)		(%)		
	참석수당		.	
	사무용품비		.	
	∴		.	

<작성요령>

- ① 사업내용 : 세부사업명을 기재
- ② 지출항목 : 홍보비, 인쇄비, 강사료 등 예산비목으로 구분
- ③ 금 액 : 천원 단위로 작성
- ④ 산출기초 : 구체적인 산출근거 기재 예시) 단가(원) × 수량
- ⑤ 유의사항
 - 기본적인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공과금, 사무관리비 등 운영비 명목의 지출경비 편성 불가
 - 단일 지출항목을 보조금과 자부담으로 나누어 편성, 집행할 수 없음
 - 예비비, 잡비 등 사용목적이 불분명한 예산 편성 불가(지출항목별 구체적 산출근거 제시)
 - 자부담은 실제 집행할 수 있는 금액으로 반드시 집행하여야 함(보조금 집행기준과 동일하게 집행)

7. 지방보조사업 수행에 따른 수입금

(단위 : 천원)

수입내용	수입금액	비고

8. 기대효과

- 사회적(공익적) 기여도 (사회문제 해결 등)
-
- 단체 역량 발전에 대한 기여도
- ※ 사업추진에 따른 사회, 시민 등에 미치는 효과를 구체적으로 기재

<작성 예시>

지출항목(비목) 집행계획

(단위 : 천원)

사업내용	지출항목	금 액	산 출 기 초	집행시기
총 계		7,039 (100 %)		
지방보조금(소계)		3,710 (52.7%)		
세부사업명 1	원고료	910	○ 일반원고 - 13,000원×10매×6명 = 780,000원 ○ 파워포인트 원고(2장당 A4 1매로 간주) - 13,000원×10매 = 130,000원	4월~5월
	인쇄비	1,100	○ 강의원고 인쇄 - 10,000원×100권×1.1 = 1,100,000원	4월~5월
세부사업명 2	강사료	1,700	○ 특급강사 - 300,000+200,000(초과료)×2명 = 1,000,000원 ○ 1급강사 - 250,000+120,000(초과료)×1명 = 370,000원 ○ 3급강사 - 80,000+50,000(초과료)×3명 = 330,000원	7월
자부담(소계)		3,329 (47.3%)		
세부사업명 1	인건비	300	○ 행사 도우미 - 60,000원×5명×1회 = 300,000원	5월
	홍보비	150	○ 코사이지(행사용 꽃) 구입비 - 2,500원×20개 = 50,000원 ○ 사무용품 구입비 - 100,000원 = 100,000원	4월~5월
세부사업명 2	인쇄비	1,749	○ 식순 유인비 - 300×300매×1.1 = 99,000원 ○ 단체 홍보 브로슈어 제작 - 5,000원×300매×1.1 = 1,650,000원	5월~6월
	국내여비	130	○ 강사여비(시외) - 식비 20,000원×1명 = 20,000원 - 숙박비 50,000원×1박×1명 = 50,000원 - 교통비 30,000원×2회×1명 = 60,000원	7월
	회의비	1,000	○ “○○○세미나” 기획회의 - {70,000+30,000(초과료)}×10명×1회=1,000,000원	7월

[서식3]

공동주택 일반 현황

□ 공동주택 개요

공동주택명	○○ 아파트		
위 치			
대지면적	㎡	층수 / 연면적	~ 층 / ㎡
단지규모	동 세대	사용승인일	년 월 일
국민주택규모 세대수	() 세대	단지내 교통사고 발생 건수	○건 / 중상(), 경상()

※ 국민주택 규모 : 전용면적 85㎡이하, 단지내 교통사고 중상 : 전치 3주 이상의 부상

□ 공동주택 현황

○ 일반사항	○
	○
	○
○ 공동체 활동 현황	○
	○
	○
○ 보조금 지원 현황 (예시)	※ 최근 5년간 市 또는 자치구 보조금 지원 이력 기재 요함.
2022년도	▶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 60백만원 / 대전시청
2021년도	
2020년도	
2019년도	▶ 노후 공동주택 공용시설 지원사업 / CCTV설치 15백만원 / ○○구청
2018년도	

※ 작성요령

- 일반사항 : 단지의 연혁 및 관리방법,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운영 등 기본현황 중심으로 간략히 기술
- 공동체 활동 현황 : 공동체 활성화 단체 현황 및 입주민이 추진하는 우수 공동체 활동 사례 및 단지내 파급 효과를 중심으로 간략히 기술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사업비(활동비) 지원 기준

지원가능	지원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활동비 ○ 강사비 ○ 식 비 ○ 홍보인쇄비 ○ 소모성 물품구입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복 보조금 지원 ○ 단체운영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무실임대료, 상근직원 인건비 등 ○ 시설비 ○ 자산 취득비 ○ 이행 보증증권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 예산 편성 기준 (1)

구 분	적용 내용 및 기준금액	적용범위
물품구입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산취득비는 불가, 자부담편성원칙 ■ 사업에 필수적인 물품의 확보 ■ 입차비보다 저렴할 경우 보조금으로 편성 구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청과 사전협의 후 구입한 경우만 인정 ■ 물품 반출입 대장 작성
원고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과 관련한 자료집, 홍보물 기고에 대한 수당 ■ 신규 작성 원고만 인정, 강의 원고는 제외 ■ A4 1매 13,000원, 200자 원고지 1매 3,5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씨 13포인트 ■ 장평 및 자간 100% ■ 여백 상·하 15mm, 좌우25mm ■ PPT 원고 2장당 A4 1면 간주 ※ 표지, 목차, 간지 등은 제외
회의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관련 회의를 개최하고 외부전문가 등을 초대한 심사 또는 자문에 대한 수당 ■ 2시간 이내 : 70,000원, 2시간 초과 : 100,0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급한도 : 100,000원
인건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관련 외부 인력 활용에 따른 수당 ■ 1일 최대 50,000원/인 ■ 2시간 초과 : 100,0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일 최대 8시간 인정 ■ 시간당 9,160원(최저시급)
교육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공동체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 교육 비용 ■ 교통비, 통행료, 식비 별도 편성 불가 ■ 최대 25만원 / 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성원 2명 이내 ■ 초과비용은 자부담
운영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 사업에 필요한 소모품 구입비 ■ 사업과 관련 없는 사무비용 편성불가 ■ 식 비 7,000원/인 이하. ■ 다과비 3,000원/인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비 정산
임차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관련 단기간 물품, 시설, 공간, 차량 등 임차 ■ 마을 공간 조성 분야의 공간 임대료 지급불가 ■ 총액 30%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도 내 실비 정산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 예산 편성 기준 (2)

편성항목		기준	사용한도액		비고
강사 수당	1급 강사	전직 4급 이상 공무원 박사학위를 소지한 5급공무원 전직 지방의회의원(의장 포함), 전직 대학교수, 기업·기관 단체의 임원, 중역 판검사 및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등 해당분야 실무경력자	최초 1시간	250,000원	◦ 외래강사에 한해 지급 ◦ 단체 내부자 지급 불가 ▶ 위반시 전액 환수조치
			초과 매시간	120,000원	
	2급 강사	전직 5급 이하 공무원, 전직 대학 강사 중소기업 임원급, 기업·기관 단체의 부장급 원어민 어학 강사, 예술인, 종교인 기타 전문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해당분야 실무경력자	최초 1시간	160,000원	
			초과 매시간	70,000원	
3급 강사	외국어, 전산 등 강사 체육, 레크리에이션 등 취미소양 강사	최초 1시간	80,000원		
		초과 매시간	50,000원		
4급 강사	각종 교육운영(실기실습 등) 보조자	최초 1시간	60,000원		
		초과 매시간	40,000원		
소규모 수선비 (재료비적성격)		· 시설 운영비 기준에 따름	- 지원액의 20%이내		

※ 모든 거래는 단체내부자 및 내부 사업자 지급불가(물품구입 및 재료구입, 강사료)

- 위반 시 환수조치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 항목별 지출증빙서류 기준

편성항목	지출증빙서류	비고	
강사수당	지급내역서, 강의 확인서(서명), 강의증빙자료 (교안, 출석부, 강의사진 중 택1), 원천징수영수증(해당시), 계좌이체확인증		
회의참석 및 심사수당	지급내역서, 회의참석 확인서(서명), 회의록 사본, 원천징수영수증(해당시), 계좌이체확인증	1일 1회에 한해 지급 세미나, 포럼 등 참석비도 포함	
원고작성수당	지급내역서, 원고작성 확인서(서명), 원고 사본, 원천징수영수증(해당시), 계좌이체확인증		
여비 (교통비)	업무진행 비의 경우	- 시내여비: 시내여비 지급내역서(서명), 계좌이체 확인증 - 교통카드 구입/충전비: 영수증, 거래내역서 - 그 외: 체크카드영수증	시내버스, 택시, 유류비, 항공료는 자부담으로 집행 유류비의 경우, 코스, 이동거리를 지 출결의서 상에 필수 기재하고 연비 는 10Km/1L 기준 계산
	사업운영 비의 경우	체크카드영수증	
식비 & 다과비	업무진행 비의 경우	체크카드영수증	지출결의서 상에 참석자명단 필수기 재
	사업운영 비의 경우	체크카드영수증, 행사증빙자료(회의록 등)	
소모성 물품구입비	체크카드영수증(세금계산서, 계좌이체확인증)	지출결의서 상에 산출내역 (품목, 단가, 수량 등) 구체적 기재	
홍보인쇄비	견적서, 홍보인쇄물 도안, 체크카드 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좌이체확인증)	자치구와 협의후 제작하며, 홍보물 에 시/구 후원사업임을 명시 책자, 리플렛 등 홍보물은 결과보고서 별도제출	

※ 지출결의서는 육하원칙에 의하여 세부사업명, 용도/목적, 산출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입력한 후, 출력하여 편철

※ 편철시 지출결의서 또는 지출합계표 뒤에 지출증빙서류 붙임

※ 자부담 증빙도 위와 동일적용. 단, 교통카드 구입/충전비 등 현금성 지출영수증도 일부 인정

※ 각종수당 등 인건비성 경비 지급시 1인에 대한 지급금액이 월12만5천원을 초과할 경우,

원천징수 후 원천징수영수증 첨부(익월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자원 사업비 산출 내역 작성 예시

2023년도 공동주택 단지내 도로시설 보수 지원사업 공고

우리 구 공동주택단지 내 노후화 된 도로시설 보수로 주민의 통행안전을 위해 단지 내 도로보수 지원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10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접수기간 : 2023. 3. 6. ~ 3. 17.(12일간)
2. 접수장소 : 공동주택과 및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3. 신청대상
 -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으로서 사용검사 또는 사용승인 후 15년이 경과한 의무관리단지*
 - *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 또는 중앙집중 난방식 공동주택 (☞ 2007년 12월 31일 이전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
 - ※ 최근 5년 내 도로시설 보수사업 지원 제외, 공동주택 노후공동시설물 중복지원 불가(단, 안전상 보수시급성을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또는 예산대비 지원 신청이 저조할 경우 예외)
4. 지원대상 사업 : 단지내 도로(관통도로*) 보수(차단기 설치 시 지원불가)
 - *불특정 다수(인근주민 및 차량)의 통행이 가능한 공익적 성격의 도로
5. 지원 금액
 - 총 사업비의 60% 범위 내에서 1개 단지 5천만원 지원
6.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 장기수선계획서 사본 1부(해당 단지 한정)
 - 자부담능력 입증자료(잔액증명서, 통장사본 등)

세부 사업명	지출항목 (예산과목)	산출근거	예산액 (단위:천원)	재원(단위:천원)		비고
				보조금	자부담	
		합 계	1,870	1,510	360	
		소 계	475	325	150	자부담 31.5%
A사업 (예시)	강사수당	■ 외부강사 수당 (3급 2시간) 130,000원×1명×5회=100,000원	100	100	-	
	재료비	■ 재료비 5,000원×15명×3회 = 225,000원	225	225	-	
	간식비	■ 간식비 2,000원×15명×5회 = 150,000원	150	-	150	
		소 계	700	600	100	자부담 14%
B사업 (예시)	홍보비	■ 리플렛 제작 100,000원×1회=100,000원	100	100	-	
	공연비	■ 공연비 500,000원×1회=500,000원	500	500	-	
	인건비	■ 행사 보조인력 50,000원×2명 = 100,000원	100	-	100	
		소 계	695	585	110	자부담 15%
C사업 (예시)	원고료	■ 일반원고 13,000원×10매 = 130,000원 ■ 파워포인트 원고 6,500원×10매× = 65,000원	195	195	-	PT원고 2장 A 4 1매 간주
	인쇄비	■ 강의원고 인쇄 5,000원×20권×1.1 = 110,000원	110	-	110	집행시기 (7월)
	강사수당	■ 3급 강사 80,000원+50,000(초과료)×3명 = 390,000원	390	390	-	집행시기 (8- 9월)

- 소요사업비 산출내역 및 설계도서
 - ※ 견적으로 제출 시 3개 업체 이상 비교 견적 제출
- 지방보조사업자 청렴이행서약서 1부 및 최근 3년간 경비원 고용 현황 증빙 서류(용역 관리 포함)
 - ※ 2019년 경비원 고용현황, 2022년 경비원 고용현황 증빙자료 제출
- 2022년도 정부 및 지자체의 포상 증빙자료(해당단지에 한함)
- 경비원 및 청소원 휴식공간 마련, 에어컨 등 설치로 환경개선 증빙자료(해당단지에 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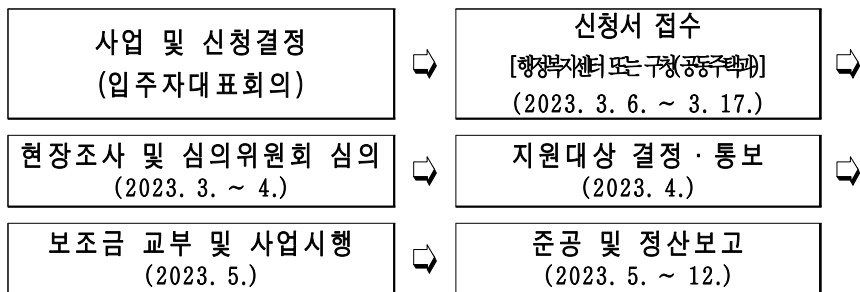
7. 지원사업의 결정

- 심사기준(사업의 적정성, 효과성, 공공성, 단지규모, 노후도, 기 지원현황 등)에 의거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에 의한 현장 확인 후 “대덕구 공동주택 지원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단지 및 지원액 결정
-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된 사업은 동장 및 관리주체에게 통보하며, 관리주체는 선정된 사업을 게시판 등에 게시

8. 지원결정의 취소사항

- 지원결정을 받기 전에 사업을 시행한 경우
- 지원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 사업비 과다 또는 허위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신청한 경우
-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 계획으로 정부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 기타 관계법령 규정 위반 등 보조금 지급에 장애요인이 있을 경우

9. 지원절차



10. 유의사항

- 접수된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서류 일체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사업계획서는 현황사진 포함 3매 이내로 1부 제출(추후 구청 요구 시 추가 제출)
- 예산 균형집행 계획에 의거 반드시 5월 이내 공사 착공
- 해당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공사사업자를 선정하여 시행
- 공동주택관리법 상 의무관리대상 단지는 국토교통부 고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라 공사사업자 선정
- 지원으로 보수완료 된 시설은 대덕구 지원 받은 시설임을 표시

11.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덕구청 공동주택과(☎ 042-608-416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식1>

공동주택 단지내 도로시설 보수비용 지원신청서						
신청자	공동주택명				동 수	
	위 치				세 대 수	
	입주자대표회의의결일				준 공 일	
신 청 내 용						
구 분 (분야)	사 업 개 요			총사업비(단위:천원)		
	사업명	착 공 예정일	완 공 예정일	계	지원금 신청액	자 체 부담액
<p>대전광역시대덕구공동주택지원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23년 월 일</p> <p>신청인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 (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 (인) 연락처 ○○○-○○○○-○○○○</p> <p>대덕구청장 귀하</p>						
구비서류	1.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2. 장기수선계획서 사본(해당 단지 한정) 3. 산출내역서 및 설계도서 4. 청렴이행서약서 및 경비원 고용 현황 증빙서류(2019년, 2022년 자료 제출)					

<서식2>

사업 계획서

단 지 명 :

사 업 개 요

- 공 사 명 :
- 총사업비 :
- 산출내역(간략)
-
-
-

○○○○(대상 공동시설) 전체 현황

-
-
-
-
-
-

사 업 내 용

-
-

추진 기간 :

그 동안 ○○○○(대상 공동시설) 보수 내역

-
-
-

※ 년도 순으로 작성 요망

□ 현황(시설) 사진

※ 전경사진 1매, 시설물 별 1매 이상 사진 첨부

사이즈 4×6(10.2cm×15.2cm) 이상

<서식3>

지방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대덕구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 하겠으며, 귀 구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 하고 귀 구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 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지방재정법 제97조 및 제98조)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부과
 -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한 자에 대해서는 각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관련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자,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각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98조)**
 -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자,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

2023. .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서명)
책임관리자 직책 관리사무소장 성명 (서명)

2023년도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외벽도색 지원사업 공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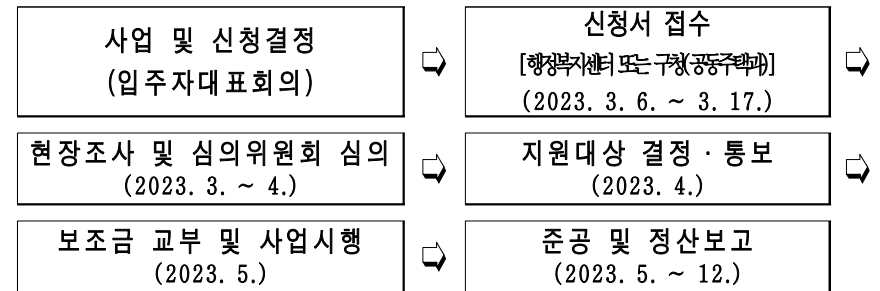
우리 구 소규모 공동주택의 쾌적한 공동체 공간조성 및 도시 경관 증진 도모하기 위한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외벽도색 지원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10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 접수기간 : 2023. 3. 6. ~ 3. 17.(12일간)
- 접수장소 : 공동주택과 및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대상
 - 사용검사 또는 사용승인 후 15년이 경과한 소규모 공동주택*
 - *소규모 공동주택 :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
(☞ 2007년 12월 31일 이전 사용검사를 받은 소규모 공동주택)
 - ※ 공동주택 노후공동시설물 중복지원 불가 (단, 예산대비 지원 신청이 저조할 경우 예외)
- 지원대상 사업 : 소규모 공동주택 색채디자인 및 외벽도색 비용 지원
- 지원 금액
 - 총 사업비의 80% 범위 내에서 1개 단지 2천만원 이하 지원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 대표회의 또는 관리기구(관리소장)가 미구성된 단지는 단지 대표자가 전체 입주자 등의 2/3 이상 동의를 거쳐 제출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 * 의결서를 별도로 작성하지 않을 시 회의록(회의참석자 서명)사본

- 장기수선계획서 사본 1부(해당 단지 한정)
 - 자부담능력 입증자료(잔액증명서, 통장사본 등)
 - 소요사업비 산출내역 및 설계도서
 - ※ 견적으로 제출 시 3개 업체 이상 비교 견적 제출
 - 지방보조사업자 청렴이행서약서 1부
- 지원사업의 결정
 - 심사기준(사업의 효과성, 적합성, 노후도, 단위세대 규모, 단지규모 등)에 의거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에 의한 현장 확인 후 “대덕구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단지 및 지원액 결정
 -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된 사업은 동장 및 관리주체에게 통보하며, 관리주체는 선정된 사업을 게시판 등에 게시
 - 지원결정의 취소사항
 - 지원결정을 받기 전에 사업을 시행한 경우
 - 지원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 사업비 과다 또는 허위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신청한 경우
 -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 계획으로 정부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 기타 관계법령 규정 위반 등 보조금 지급에 장애요인이 있을 경우
 - 지원절차



- 유의사항
 - 접수된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서류 일체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사업계획서는 현황사진 포함 3매 이내로 1부 제출(추후 구청 요구 시 추가 제출)
 - 예산 균형집행 계획에 의거 반드시 5월 이내 공사 착공

○ 해당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공사사업자를 선정하여 시행

11.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덕구청 공동주택과(☎ 042-608-416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식1>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외벽도색 지원사업						
신청자	공동주택명				동 수	
	위 치				세 대 수	
	입주자대표회의의결일				준 공 일	
신 청 내 용						
구 분 (분야)	사 업 개 요			총사업비(단위:천원)		
	사업명	착 공 예정일	완 공 예정일	계	지원금 신청액	자 체 부담액
<p>대전광역시대덕구공동주택지원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23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인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 (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 (인) 연락처 ○○○-○○○○-○○○○</p> <p>대덕구청장 귀하</p>						
구비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2. 장기수선계획서 사본(해당 단지 한정) 3. 산출내역서 및 설계도서 4. 청렴이행서약서 					

<서식2>

사업 계획서

단 지 명 :

사업 개요

- 공 사 명 :
- 총사업비 :
- 산출내역(간략)
-
-
-

○○○○(대상 공동시설) 전체 현황

-
-
-
-
-
-

사업 내용

-
-

추진 기간 :

그동안 ○○○○(대상 공동시설) 보수 내역

-
-
-

※ 년도 순으로 작성 요망

현황(시설) 사진

※ 전경사진 1매, 시설물 별 1매 이상 사진 첨부

사이즈 4×6(10.2cm×15.2cm) 이상

- 재난·재해로 인하여 안전상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의 유지보수
-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용시설 보수

5. 지원 금액

- 총 사업비의 80% 범위 내에서 단지별로 최대 1천만원 이하 지원

지원	· 의무관리단지 60% 이내 · 의무관리단지 이외 단지중 80세대 이상 단지 70% 이내
기준	· 80세대 미만 단지 80% 이내

6.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 대표회의 또는 관리기구(관리소장)가 미구성된 단지는 단지 대표자가 전체 입주자 등의 2/3 이상 동의를 거쳐 제출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 * 의결서를 별도로 작성하지 않을 시 회의록(회의참석자 서명)사본
- 장기수선계획서 사본 1부(해당 단지 한정)
- 자부담능력 입증자료(잔액증명서, 통장사본 등)
- 소요사업비 산출내역 및 설계도서
 - ※ 견적으로 제출 시 3개 업체 이상 비교 견적 제출
- 지방보조사업자 청렴이행서약서 1부 및 최근 3년간 경비원 고용 현황 증빙 서류(용역 관리 포함)
 - ※ 2019년 경비원 고용현황, 2022년 경비원 고용현황 증빙자료 제출
- 2022년도 정부 및 지자체의 포상 증빙자료(해당단지에 한함)
- 경비원 및 청소원 휴식공간 마련, 에어컨 등 설치로 환경개선 증빙자료(해당단지에 한함)

7. 지원사업의 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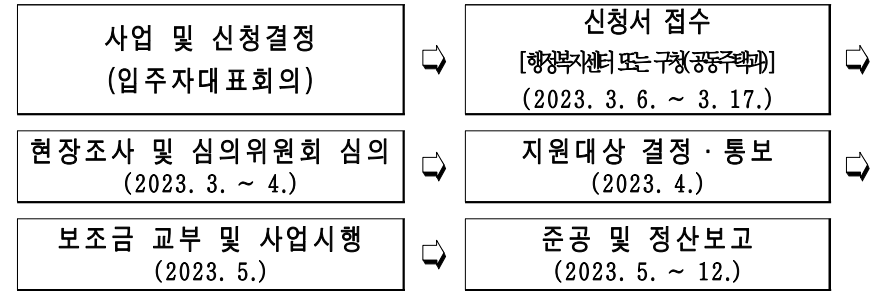
- 심사기준(사업의 필요성 · 시급성 · 단지규모, 노후도, 기 지원현황 등)에 의거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에 의한 현장 확인 후 “대덕구 공동주택지원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단지 및 지원액 결정
-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된 사업은 동장 및 관리주체에게 통보하며, 관리주체는 선정된 사업을 게시판 등에 게시

8. 지원결정의 취소사항

- 지원결정을 받기 전에 사업을 시행한 경우

- 지원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 사업비 과다 또는 허위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신청한 경우
-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 계획으로 정부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 기타 관계법령 규정 위반 등 보조금 지급에 장애요인이 있을 경우

9. 지원절차



10. 유의사항

- 접수된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서류 일체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사업계획서는 현황사진 포함 3매 이내로 1부 제출(추후 구청 요구 시 추가 제출)
- 예산 균형집행 계획에 의거 반드시 5월 이내 공사 착공
- 해당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공사사업자를 선정하여 시행
- 공동주택관리법 상 의무관리대상 단지는 국토교통부 고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라 공사사업자 선정
- 지원으로 보수완료 된 시설은 대덕구 지원 받은 시설임을 표시

11.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덕구청 공동주택과(☎ 042-608-416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식1>

공동주택 공동시설물 관리비용 지원신청서						
신청자	공동주택명				동 수	
	위 치				세 대 수	
	입주자대표회의의결일				준 공 일	
신 청 내 용						
구 분 (분야)	사 업 개 요			총사업비(단위:천원)		
	사업명	착 공 예정일	완 공 예정일	계	지원금 신청액	자 체 부담액
<p>대전광역시대덕구공동주택지원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23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 (인)</p> <p style="text-align: center;">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 (인)</p> <p style="text-align: center;">연락처 ○○○-○○○○-○○○○</p> <p>대덕구청장 귀하</p>						
구비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2. 장기수선계획서 사본(해당 단지 한정) 3. 산출내역서 및 설계도서 4. 청렴이행서약서 및 경비원 고용 현황 증빙서류(2019년, 2022년 자료 제출) 					

<서식2>

사업 계획서

단 지 명 :

사 업 개 요

- 공 사 명 :
- 총사업비 :
- 산출내역(간략)

-
-
-

○○○○(대상 공동시설) 전체 현황

-
-
-
-
-
-

사 업 내 용

-
-

추진 기간 :

그동안 ○○○○(대상 공동시설) 보수 내역

-
-
-

※ 년도 순으로 작성 요망

□ **현황(시설) 사진**

※ 전경사진 1매, 시설물 별 1매 이상 사진 첨부

사이즈 4×6(10.2cm×15.2cm) 이상

지방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대덕구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 하겠으며, 귀 구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 하고 귀 구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 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지방재정법 제97조 및 제98조)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부과
 -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한 자에 대해서는 각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관련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자,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각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98조)**
 -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자,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

2023. .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서명)
 책임관리자 직책 관리사무소장 성명 (서명)

공동주택 선거관리 전자투표 실시 지원계획 공고

우리 구 공동주택의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하여 전자투표 서비스 소요비용을 아래와 같이 지원하고자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10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 기간 : 2023. 2. ~ 2023. 12.
- 지원대상 및 기준 : 의무 관리대상 공동주택 / 단지별 연 2회 지원 (여건 고려 변경가능)
※ 300세대 이상, 150세대 이상(승강기, 중앙집중·지역난방, 주상복합)
- 지원대상
 - 동별 대표자 및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출
 - 공동주택 관리방법의 결정 및 변경, 관리규약의 제·개정
 - 공동·구분관리 결정 등 서면동의에 의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경우
 - 그 밖에 공동주택 관리 관련 의사를 결정하는 경우
- 지원방법 :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에서 지원신청 및 전자투표 후 소요비용 신청
※ 선관위에서 설치·운영하는 현장투표소 소요비용도 지원

◆ 지원내역(금액) / (아파트e투표,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 전자투표 세대당 550원 (변동 가능)
- 현장투표소 지원내역
 - 현장지원 인원 : 2명 (44만원)
 - 현장지원 물품 : 터치스크린 PC단말기 2대, 노트북 1대, 투표권카드, 단말기 등

※ 민간 업체 사용 가능하나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아파트 e투표 지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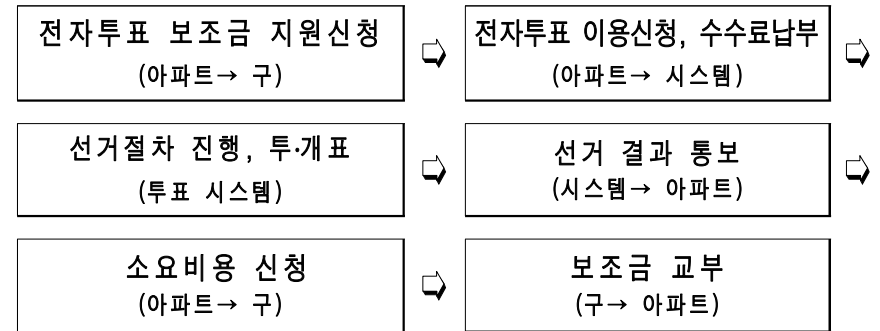
5. 제출서류

전자투표 실시 전	· 지원신청서 1부
전자투표 실시 후	· 보조금 교부신청서 1부 · 선거관리위원회 전자투표 비용납부 영수증 사본 1부 · 보조금 전용통장 사본 1부

6. 지원결정의 취소 사항

- 기타 관계법령 규정 위반 등 보조금 지급에 장애요인이 있을 경우

7. 지원절차



※ 투표 시스템

투표 시스템	아파트e투표,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홈페이지 주소	https://e-vote.lh.or.kr
이용문의	1600-7004

8. 유의사항

- 접수된 신청서 등 서류 일체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제출 서류의 미비 또는 허위 기재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9.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덕구청 공동주택과(☎ 608-416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지방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대덕구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 하겠으며, 귀 구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 하고 귀 구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 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지방재정법 제97조 및 제98조)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부과
-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내용,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한 자에 대해서는 각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관련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자,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각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98조)

-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

2023. .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서명)

책임관리자 직책 관리사무소장 성명 (서명)

소하천정비시행계획의 공고

「소하천정비법」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2022년 소하천(배오개천) 정비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10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소하천명	사업 개요								비고
	공사명	공사 위치		사업량(m)			공사기간		
시작하는 지점		끝나는 지점	축제 (築堤)	호안 (護岸)	기타	착공	준공		
배오개천	이현동 161	이현동 135	-	105	-	'23. 4 (예정).	'23. 7 (예정).	재해 예방	수용·사용할 토지 및 물건 조서 별첨

<열람서류>

1. 실시설계도서(개제생략)
2. 위치도 (축척 50,000분의 1 지형도/붙임)
 - ※ 열람장소 : 대덕구청 건설과 (tel : 042-608-5224)
 - ※ 열람기간 : 2023. 2. 10. ~ 2023. 2. 28. 끝.

소하천 정비시행계획

○ 소하천 정비공사의 명칭 : 2022년 소하천(배오개천) 정비사업

○ 소하천 정비공사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소하천인 배오개천에 대하여 노후제방 등을 정비하여 재해위험을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음.
- 개 요 : 하천정비L=105m
- 위 치 : 대덕구 이현동 135-1번지 일원

○ 소하천 정비공사를 시행하는 자의 명칭 및 주소

- 명 칭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 1033번길 20(오정동)

○ 소하천 정비공사의 착공 및 준공 예정 연월일

- 착공일 : 2023. 4.
- 준공일 : 2023. 7.

○ 실시설계도서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도시건설국 건설과에 비치

○ 사업비 및 자금의 조달계획서

- 사업비(재원 및 연도별)

구 분	재 원 별(천원)					비 고
	연도별	계	국 비	시 비	구 비	
2022년도	200,000	-	200,000	-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 사업명 : 2022년 소하천(배오개천) 정비사업

가. 토지 또는 토지소유권 외의 권리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대전 대덕구 이현동	135	답	1,327	69	정*식	이현동 178				
2	대전 대덕구 이현동	136	답	955	132	정*식	이현동 178				
3	대전 대덕구 이현동	137	답	1985	52	국					
4	대전 대덕구 이현동	138-2	대	1504	3	국(환경부)					
5	대전 대덕구 이현동	161	답	1226	16	문*락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서로 25 번길 22, 202호(월평동)				
6	대전 대덕구 이현동	135-1	천	640.1	578.0	대덕구					
7	대전 대덕구 이현동	707-6	구	3,964.5	762	국(환경부)					
8	대전 대덕구 이현동	156-1	천	1,391	616	대덕구					

□ 위치도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고 제2023-173호

비래동로 노상 공영주차장 수탁관리자 선정 입찰 공고

「주차장법」 제8조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차장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비래동로 노상 공영주차장(비래프라자~금성백조2차 아파트) 수탁관리자 선정 입찰 공고를 다음과 같이 전자입찰 공고하고자 합니다.

2023년 2월 10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 참고사항

- 입찰대상 주차장의 주변상황 파악 및 시장조사를 철저히 하여 수익률을 확인 후 적정가격으로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익적 사유 등으로 인하여 유료운영이 일정 기간 중단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탁료를 일할 정산하여 고지할 예정입니다.
- 대전광역시 노상 실시간 주차정보시스템 구축 완료 시 위탁자는 시스템 및 노상 요금계산 단말기 등을 도입할 예정이며, 수탁자는 단말기 통신요금 등 운영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 본 주차장은 노상 주차장의 특성 상 관리상의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월정기주차권제는 시행하지 않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주차장 현황 및 조건

주차장명	위 치	급지	면적 (㎡)	주차 면수	운영시간	최저입찰가격
비래동로 노상 공영 주차장	비래프라자 ~ 금성백조2차@	4	850	60면	09:00 ~ 20:00	금7,646,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p>※ 입찰가격은 총수탁기간(2년중) 무료개방일(법정공휴일 및 토요일)을 제외한 수탁료임을 감안하여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 수탁기간 : 2년 (2023. 2. 20. ~ 2025. 2. 19.)

2. 입찰 및 계약방법

- 본 입찰은 지역제한 경쟁입찰이며,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 시스템(이하“온비드”라 합니다, <http://www.onbid.co.kr>)을 이용한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합니다.
- 예정가격 이상의 최고가격 낙찰제

3. 입찰참가자격

-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차장 조례 제7조에 의거 공고일 전일 현재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대전광역시에 둔 법인 또는 주민등록상 주소가 대전광역시에 등재되어 있는 개인으로서 우리구 공영주차장 위수탁관리조건을 전적으로 수락하고, “온비드”회원으로 등록하고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로 온비드 시스템에 등록을 필한 자.

4. 입찰참가방법

-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방법은 “온비드”(http://www.onbid.co.kr)에 접속하는 방법에 의합니다.
-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자는 “온비드”에 회원으로 등록하여야 하고,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를 온비드에 등록후 입찰화면에서 입찰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5. 입찰서의 제출 및 개찰

입찰서 제출 및 보증금 납부일시	입찰집행(개찰)일시	입찰서 제출처	개찰장소
2023. 2. 10. 10:00 ~ 2023. 2. 15. 16:00	2023. 2. 17. 10:00	http://www.onbid.co.kr	대덕구청 입찰집행관 PC

- ※“온비드”시스템 장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 입찰서의 제출은 “온비드” 입찰화면에서 입찰서를 “온비드”로 송신하는 방법으로 하되, 입찰서의 제출시간은 입찰서가 “온비드”서버에 접수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 입찰서의 제출 취소는 전자입찰서 제출 및 보증금 납부일시 기간 내에 우리구에 서면으로 접수하여야 하며 취소 후에는 동일 물건에 대하여 다시 입찰 할 수 없습니다.
- 동일한 물건에 대하여 동일인이 2회 이상 유효입찰서 제출시 모두 무효 처리함.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입찰자는 입찰하고자 하는 금액의 100분의5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입찰창구 은행이 발행한 수표로 전자입찰 마감시간까지 온비드에서 지정하는 보증금 납부계좌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을 입찰 마감시간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입찰서는 무효로 처리합니다.
-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정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는 입찰보증금은 우리구에 귀속됩니다.
- ※ 전자입찰서 제출 및 보증금 납부일시까지 지정계좌에 보증금 미입금시 입찰 무효처리

7. 낙찰자의 결정방법

- 1인 이상 참여한 유효한 입찰로서 예정가격 이상의 최고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 1인이 입찰하는 경우에도 예정가격 이상으로 입찰하는 때에는 유효한 입찰로 성립
- 개찰결과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한 입찰금액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온비드” 시스템상 무작위 추첨방법(난수발생기에 의한 자동선택 기능)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 낙찰자의 제출서류 및 제출기한

- 주민등록등본(법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부.
- 사업자등록증 1부.
- 인감증명서 1부(인감도장 지참).
-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사본) 1부.
- 손해(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가입증명서) 1부. / 계약 후 위탁사용 개시 전 제출
- 제출기한 : 2023. 2. 17.(금) 16:00까지

9.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및 “온비드” 시스템 상의 회원약관 및 인터넷 입찰참가자 준수규칙에 위배된 입찰

10. 관리계약 체결

- 가. 위·수탁 관리계약 체결 : 낙찰자의 제출서류를 지정기한내 제출하여야 하며, 불이행시 입찰보증금은 우리구로 귀속함
- 나. 계약보증금의 귀속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때, 수탁관리 계약을 체결한 후 중도포기한 경우)의 규정에 의거 우리구로 귀속

11. 입찰의 연기 또는 취소

- “온비드”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집행관은 입찰을 연기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입찰연기 또는 취소의 공고는 “온비드”상의(공매공고-연기공고, 취소공고)게재에 의할 수 있습니다.

12. 계약체결 유의사항

- 낙찰자는 2023년 2월 17일까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계약보증금 및 수탁료 납부 : 계약 체결시 입찰금액의 10/100 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하며, 수탁료(=낙찰금액)는 선납 또는 분기별 분할 납부(매분기 개시전월 납부통보에 의거 납부 / 분할납부시 연 4.29%의 이자납부)

13. 전자입찰에 따른 유의사항

- 본 입찰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 시스템상의 전자입찰로만 진행되므로 입찰관련 법령 및 전자입찰관련 법령, 입찰공고조건, 인터넷 입찰참가자준수규칙, 주요위탁조건(운영기간, 유료운영시간, 주차요금등)등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시 “온비드”에서 입찰서 제출시 명기된 보증금 전액을 한번에(분할납부 불가) 입금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을 창구에서 수표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창구은행이 발행한 수표만 입금 가능합니다.
- ※ 입찰보증금을 은행창구에서 입금창구은행이외의 타은행이 발행한 수표를 입금하는 경우, 입찰보증금액보다 미만이거나 초과하여 입금한 경우, 보증금을 분할하여 입금하는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입금처리가 안됨을 알려드립니다.

14. 기타 유의사항

- 주차요금 및 주차장관리자 실명표시제 실시 등 수탁조건을 전적으로 수

락하는 조건부 선정이오니, 공고문 및 계약서(안)등을 숙지하여 불이익처분을 받지 않도록 입찰 참가시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하며, 입찰시 입찰조건 및 방법을 숙지하지 못하여 불이익 처분을 받은 경우와 입찰금 과다제출로 인한 적자발생 등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5. 문의사항

-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 시스템 “온비드” 이용에 관한 사항
- 홈페이지 : <http://www.onbid.co.kr> (1588-5321)
- 계약, 위치, 입찰에 관한 문의사항
- 대덕구청 교통과 (042-608-5294)
- 입찰에 관한 진행사항 확인 : <http://www.onbid.co.kr> “온비드” 시스템상
- 입찰서 제출여부 : 온비드/나의 온비드/입찰내역
- 입찰보증금납부여부 : 온비드/나의 온비드/입찰내역
- 입찰결과 : 온비드/나의 온비드/입찰내역. 끝.

대전광역시 대덕구 노상주차장 설치 행정예고

주민들의 주차편의 및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대전광역시 대덕구 노상주차장 설치를 시행함에 앞서 그 취지와 내용을 이해관계인 및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공고) 합니다.

2023년 2월 10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행정예고 할 내용: 대전광역시 대덕구 노상주차장 설치
2. 행정예고 목적: 주민들의 주차편의 및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노상주차장 설치 추진에 따른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 의견 청취
3. 예고대상
 - 위 치 : 대덕구 비래동 533번지
 - 주차면수: 17면
 - 조성시기: 2023. 3월 중
 - 관리주체: 대전광역시 대덕구 교통과
4. 관련근거
 - 가. 「주차장법」 제7조(노상주차장의 설치 및 폐지)
 - 나.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5. 행정예고(공고)방법: 대전광역시 대덕구 홈페이지(<https://www.daedeok.go.kr>)
6. 행정예고(공고)기간: 2023. 2. 10.(금) ~ 2023. 3. 3.(금) (21일간)
7.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의견서 기재사항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등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나. 제출처: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교통과(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20)
- 다. 제출방법: 직접방문, 우편, 팩스, 메일 (FAX: 042-608-3845, 메일: hgmooon94@korea.kr)
- 라. 제출양식: 의견제출서(붙임 참조)
- 마. 제출기일: 2023. 2. 10.(금) ~ 2023. 3. 3.(금)
- 바. 문의사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교통과 주차시설팀(042-608-5293)
 - ※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붙임 1. 의견제출서 1부.
2. 위치도 1부. 끝.

붙임 1 **의견제출서**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의견제출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의견	
기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의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붙임 2 **예고 대상 위치도**



회덕동(장동)~상서간 도로개설사업 보상계획[3차] 및 열람 공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고시 제2020-127호(2020.11.27)로 사업승인 고시된 회덕동(장동)~상서간 도로개설사업에 편입된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3차]을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와 관계인께서는 토지 및 물건 내역을 열람하시고 조서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기간 동안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2월 10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1. 공익사업의 개요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사업시행자	사업 위치	사업기간
회덕동(장동)~상서간 도로개설사업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시 대덕구 장동 산116-1 ~상서동 산12-1	2018년 ~2024년

2. 보상대상(3차) 및 열람내용

토 지	토지소재지(금차 시행토지)
대전시	19-3, 19-6, 19-7, 20, 21-3, 22-4, 22-5, 23-1, 24-4, 26-4, 27-1
대덕구 상서동	799-10, 799-12, 산15-1, 산16-7, 산17-9, 산17-10, 산17-11
물건	- 위 토지 상에 소재한 물건과 권리관계 등 일체
비고	- 토지·물건의 세부 내용은 개별통지하며 (미등기 물건의 소유자·점유자에 대한 통지는 본 공고로 갈음함), 열람기간 중 열람 장소에 비치하여 열람합니다. - 상기 보상대상 지번은 지구계 분할측량 결과를 반영한 신규 지번임

3. 조서의 열람 및 이의신청

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 2023.02.10.~2023.02.24. 09:00~18:00

나.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대덕구청 별관 4층 도시계획과)
※ 열람기간 중 토요일, 일요일은 대덕구청 당직실(본관1층)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다. 열람 및 이의신청 방법

- 열람방법 : 열람기간 중 토지와 물건의 소유자나 관계인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여 본인임을 확인받으신 후 지정 장소에서 열람합니다.
- 이의신청방법 : 보상계획 안내문에 첨부된 이의신청서 또는 열람기간 중 열람 장소에 비치된 양식에 이의내용을 기재하여 직접 제출하시거나, 우편제출 가능합니다.

주소 : 우)34443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 대덕구청 도시계획과
※ 이의신청 양식은 택지보상정보 홈페이지(bosang.lh.or.kr)에서 출력하여 사용 가능하며, 우편제출은 2023.02.24.18:00까지 도착분에 한합니다.

4. 보상시기 : 2023. 4월 예정(추후 개별통보)

※ 보상시기는 보상계획공고 이후 사업 추진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별 안내 예정입니다.

5. 보상방법 및 절차

가. 보상액 산정방법

- 토지보상법 제68조에 따라 선정된 3인의 감정평가업자가 산정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하여 보상가격을 결정합니다.
- 다만, 같은 법 제6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따라 해당 토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따라 해당 토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및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도지사 및 토지소유자 어느 한 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산정한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보상가격을 결정합니다.

나. 보상금 지급방법

- 전액 현금보상 방식

다. 보상절차

- 보상계획 공고·열람 ⇒ 감정평가 및 보상금 산정 ⇒ 손실보상 협의 ⇒ 수용제결(협회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등) ⇒ 재결금 지급 또는 공탁

○ 수용재결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토지보상법 제83조, 제85조에서 정한 기한 이내에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6. 그 밖의 사항

가. 해당 토지를 관할하는 지자체장은 「토지보상법」 제68조 제2항과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본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2023.02.24.)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할 수 있습니다.

나. 토지소유자가 「토지보상법」 제68조,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감정평가업자(1인)를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대상 토지의 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보상계획 열람기간 만료일(2023.02.24.)로부터 30일 이내에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토지소유자는 감정평가업자 1명에 대해서만 동의할 수 있습니다.

다. 본 사업의 시행으로 일단의 토지 일부가 협의 또는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의 종래 목적 사용이 곤란한 경우 또는 가치 하락 혹은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잔여지 매수 청구 및 손실 보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라.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라며, 통지가 불가능(주소불명, 미등기 토지 등)한 경우 본 공고로 통보를 갈음합니다.

마. 소유자 불명 및 부재 등의 사유로 인한 미조사 물건은 추후 보완 조사하여 보상할 계획입니다.

바. 개인별 보상액, 협의기간, 구비서류 등 보상 및 계약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상착수시기에 개별적으로 안내드릴 계획이며, 그 외 보상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 보상관리부(042-470-0618)로, 공사추진에 관한 사항은 대덕구청 도시계획과(042-608-537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고 제2023-164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법제사무 처리 규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10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 이유
단체장의 효율적인 보좌업무 추진을 위해 총 정원 내에서 공무원의 직종별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골자)
일반직을 813명에서 812명으로, 별정직을 2명에서 3명으로 조정하고, 이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 및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을 정비함(안 별표 2 및 별표 3).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3년 2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참조 : 기획홍보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 34443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 (오

정동)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기획홍보실(전화 : 042-608-6042, FAX : 042-608-3811, E-mail : dmsdud@korea.kr)

라.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이메일, 직접방문 등

5. 그 밖의 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기획홍보실 담당자 (전화 : 042-608-604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및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제3조제2항 관련)

1. 일반직공무원

구 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비 율	1% 이내	7% 이내	24% 이내	32% 이내	30% 이내	6% 이상

2. 별정직공무원

구 분	5급상당 이상	6급상당	7급상당	8급상당	9급상당
비 율	35% 이내	35% 이내	30% 이상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 ·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직급별		기관별					
		총계	본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사업소	동
총 계		816					
정무직	소계	1					
	구청장	1	1				
일반직	소계	812					
	3급	1	1				
	4급	6	4		1	1	
	5급	47	26	3	4	2	12
	6급 이하	758					
별정직	소계	3					
	5급 상당	1	1				
	6급 상당	1	1				
	7급 상당	1	1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정원의 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직간의 균형있고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 종류별로 정원책정기준에 따라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무원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 ⑤ (생략)

제30조(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삭제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회행정기관의 정원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이하 “지방전문경력관”이라 한다)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도의 5급 이하(시·군·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과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 ⑤ (생략)

대덕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의 견 :

내 용	의 견	비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법제사무 처리 규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10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 이유
조례에서 일부 정원이 조정됨에 따라 정원관리 직급·직렬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골자)
 -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직렬별 정원을 조정함(안 별표).
 - 1) 일반직 직급·직렬별 정원 조정
 - ▶ 5급: 48명 → 47명(1명 감소)
 - 2) 별정직 직급·직렬별 정원 조정
 - ▶ 5급 상당: 0명 → 1명(1명 증가)
4. 의견제출
가.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3년 2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참조 : 기획홍보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 34443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 (오정동)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기획홍보실(전화 : 042-608-6042, FAX : 042-608-3811, E-mail : dmsdud@korea.kr)
- 라.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이메일, 직접방문 등
5. 그 밖의 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기획홍보실 담당자 (전화 : 042-608-604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대전광역시 대덕구 규칙 제 호

[별표]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직렬별 정원(제2조 관련)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엑셀파일 별첨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4조(직급별 정원) 구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와 그에 해당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직렬별 정원) 구 정원관리 기관별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대덕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의 견 :

내 용	의 견	비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법제사무 처리 규정」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10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부서별 분장 사무를 정비하여 효율적이고 원활한 구정 업무를 추진하고자 함.
 3. 주요내용(골자)
○ 구 본청 실·과·단의 분장사무를 정비함(안 별표 1, 3).
 4. 의견제출
가.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3년 2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참조 : 기획홍보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 34443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 (오정동)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기획홍보실(전화 : 042-608-6042, FAX : 042-608-3811, E-mail : dmsdud@korea.kr)
- 라.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이메일, 직접방문 등

5. 그 밖의 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기획홍보실 담당자 (전화 : 042-608-604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대전광역시 대덕구 규칙 제 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및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구 본청 실·과장의 분장사무(제9조 관련)

※ 엑셀파일 별첨

[별표 3] 평생학습원장의 분장사무(제14조 관련)

※ 엑셀파일 별첨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시·군·구의 기구설치기준) ① (생략)

② 시·군·구 본청의 실장·국장과 과장·담당관의 직급과 실·과·담당관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생략)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실·국과 실·과·담당관의 명칭과 사무분장을 시·도와 시·군·구간 사무의 연계성과 그 기능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조(국장 및 실·과·단장의 직급 등)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의 국장, 실·과·단장 등 보조·보좌기관 직급과 분장사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생략)

지방자치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전부개정]

제131조(하부행정기관의 장) 자치구가 아닌 구에 구청장, 읍에 읍장, 면에 면장, 동에 동장을 둔다. 이 경우 면·동은 행정면·행정동을 말한다.

대덕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의 견 :

내 용	의 견	비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전결처리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법제사무 처리 규정」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10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전결 규정을 정비하여 효율적이고 원활한 구정 업무를 추진하고자 함.
3. 주요내용(골자)
○ 조직개편에 따른 단위사무 신설·변경 및 기안·전결권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별표).
4. 의견제출
가.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3년 2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참조 : 기획홍보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 34443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 (오정동)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기획홍보실(전화 : 042-608-6042, FAX : 042-608-3811, E-mail : dmsdud@korea.kr)

라.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이메일, 직접방문 등

5. 그 밖의 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기획홍보실 담당자 (전화 : 042-608-604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 엑셀파일 별첨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시·군·구의 기구설치기준) ① (생략)

② 시·군·구 본청의 실장·국장과 과장·담당관의 직급과 실·과·담당관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생략)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실·국과 실·과·담당관의 명칭과 사무분장을 시·도와 시·군·구간 사무의 연계성과 그 기능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조(국장 및 실·과·단장의 직급 등)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의 국장, 실·과·단장 등 보조·보좌기관 직급과 분장사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생략)

대덕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전결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의 견 :

내 용	의 견	비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